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월 6일, 윤준병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1.27.)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3.11.)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윤준병 의원)

임도(林道)는 도시민의 산림휴양 및 산촌의 생활환경 개선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시설으로써 숲을 가꾸고 생산된 목재를 수집하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산림기반시설임.

특히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산림관리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임도의 설치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더해, 최근 기후위기 심화로 인해 산불 등 산림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산림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반드시 필요한 임도가 사유림 편입부지 산주의 부동의으로 인해 설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도의 공익적 기능을 제때 구현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도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에 있어 현행법과의 체계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임재금)

현행 임도 제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제2조(정의), 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및 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에서 임도의 설치 근거, 타당성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 설계 의무, 산림(임도)사업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시 반환 등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과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 훈령)에서 임도의 종류 및 범위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체계로 이루어짐.

임도 제도를 규율하는 새로운 제정법 추진에 따라 현행법의 체계 및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제정안 제2조제1호 “임도의 정의”를 인용하여 「산림자원법」 제2조제1호 “산림의 범위”에 임도가 포함되도록 개정함(안 제2조제1호 라목 개정).

둘째,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의 추진에 따라 「산림자원법」에 있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임도 근거 조문을 정비함(안 제9조 삭제).

셋째, 「산림자원법」에 있는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조문에서 산림(임도)관리기반시설을 삭제함(안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안 제65조제1항제1호 삭제).

「산림자원법」 개정안은 제정법 추진에 따라 임도와 관련된 체계 및 조문을 정비하여 임도 관련 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조문의 분리·이관 시 임도에 관한 사항의 단순한 삭제뿐만 아니라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 제정안의 정의를 인용하여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므로(안 제2조제1호라목) 제정안과의 체계정당성을 갖추려는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임도 제도를 규율하는 새로운 제정법(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추진에 따라, 현행 임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산림자원법」의 체계 및 조문을 정비해 임도 관련 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붙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도(林道)

제9조를 삭제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조성 또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을 “조성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 다. (생략) 라. <u>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u> 마. (생략) 2. ~ 10. (생략) <u>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와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u>	제2조(정의) ----- -----. 1. ----- -----.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u>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도(林道) 마. (현행과 같음) 2. ~ 10. (현행과 같음) <u><삭 제></u>

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하 “산림관리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한 후 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설치 절차, 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한다.

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이하 “산림사업보조금”이라 한다)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의 조성 또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끝낸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산림관리
기반시설을 설치한 산림

2. (생략)

② (생략)

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①

조성을

<작 제>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